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7. 21 선고 2019가합99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A

피고중화인민공화국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박선경, 허범행

변론 종결2020. 6. 9.

판결 선고2020. 7. 21.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40,2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와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 자로, C와 별거 후 부부로서 생활 관계 없이 지내던 중 2007년경 중국에서 피고를 알게 되어, 자녀 D(E생) 및 F(G생)을 두고 사실상의 혼인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8. 4. 12. H으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분양권을 매수한 후, I 주식회사로부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8. 7. 19. 접수 제57560호로 2015. 11.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7, 17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요지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

원고는 피고와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분양권 프리미엄 10,000,000원을 더하여 H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권(분양대금 330,200,000원)을 매수한 뒤, 분양대금을 납부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명의로 분양받았다. 그런데, 계약명의신탁 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이고, 그 경우 피고는 명의신탁자인 원고로부터 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한 것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인 340,200,000원(= 분양대금 330,200,000원 + 프리미엄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닌 증여한 것으로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는 피고가 원고와의 사이에 낳은 자녀들을 양육할 것을 전제로 하는 부담부 내지는 조건부 증여인데, 피고가 가출하여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조건의 불성취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는 원고를 물주로 생각하면서 자녀들을 이용하여 원고를 속박하고 금전적이익을 챙기려는 행위를 했고, 현재에도 자녀들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함께 살고 있다. 거기에 피고가 원고의 재산을 절취하거나, 편취한 점을 더하여 볼 때 피고는 원고에 대한 민법 제55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망은행위를 한 것이므로, 2020. 3. 24.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및 준비서면의 송달로 위 증여계약을 해제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반환하여야 한다.

3) 피고로 인하여 원고가 중국에서 많은 재산손실을 보았고, 피고 가족들의 해외여행 등에 따른 비용부담, 원고의 사업부진, 자녀들의 과도한 유학비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아파트를 그대로 피고 명의로 두기에는 신의칙에 반하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반환하여야 한다.

4) 피고는 자녀들을 양육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자녀들을 양육할 목적이라고 원고를 속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았으므로, 2020. 5. 25.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기망행위를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반환하여야 한다.

5) 피고는 원고의 재산에 대한 욕심만을 가진 채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고 있고, 암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원고에 대한 거짓 폭행신고까지 하였으며, 다른 남성과 애정행각을 벌이면서, 원고와 부부로서 동거 의사가 없다는 진술을 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고에 대한 증여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

1)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5, 7,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 등을 매수할 당시 원고가 계약 과정에 참여하는 등으로 관여하였고, 아파트 매수자금 대부분이 원고나 원고가 운영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J을 통하여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더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한 명의신탁 약정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문서도 작성되지 않은 점, ② 원고가 등기필증이나 그 밖의 등기관계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중국 내에서도 피고를 위해 부동산 등을 마련해 준 것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당시 단순히 원고를 위해 소유 명의만을 빌려준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도 소유 명의만을 빌린다는 의사를 가지고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④ 원고가 피고와 사실상 혼인 관계 유지와 장래 자녀들의 양육 등을 고려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귀속시킬 생각에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대금을 부담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증거나 갑 제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계약명의신탁에 관한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

살피건대, 피고가 분양권 매수에 따른 분양계약을 통해 I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구광현

판사박애경

판사정우용

별지